

2023학년도 포천초등학교 규칙

포천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포천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포천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배움을 즐기며 꿈을 가꾸는 행복 학교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포천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포천시 신읍길 40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9월 1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4. 선거일, 학교장재량휴업일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3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1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유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이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결정한다.

제14조 (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서술형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출석 및 결석처리

제16조 (출석 인정)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처리한다.

-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학교보건법 제7,8조 동 시행령 제13조 1,2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④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1일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1항 2호)
- 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표-1〉 경조사의 대상자 일수 〈교육부 훈령 제239호〉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토요일업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되,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토요일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

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7조 (현장체험학습)(학부모 동반) 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2010.7.29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호)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족 동반 친·인척 방문 등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연간 20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확인: <https://naver.me/55yVhEUd>)**

③ 해외 체험학습은 '나' 항을 포함하여 연간 1주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현장체험학습)(학교 행사)

④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 학년별 연 1회 현장체험학습을 학년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단 6학년은 현장체험학습 또는 숙박형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입장료, 시설이용료, 기타경비 등)는 참가자가 균등히 부담한다.

⑥ 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인솔을 위해 소요되는 교사의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8조 (학교간 교류체험학습)(위탁 교육)

① 학교간 교류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경기도교육청 초등 81131-5648(1999. 7. 27)]

제7장 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제19조(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재 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1조(입학방법) ① 조기 입학은 본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전·편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24조(귀국학생의 전·편입학)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③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유예·면제 등의 재취학·편입학) ①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유예 및 면제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년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③ 학생 및 보호자가 학년을 다르게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

3.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④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제2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해당 학생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도 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보호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조기 입학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1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진학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제32조(징수금액)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본교는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5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⑥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9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_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40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학부모회의 설치) ①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천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특수교육 지원 활동

제42조 (차별의 금지)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제43조 (통합교육) ①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춘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44조 (개별화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45조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46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④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13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47조 【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4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48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1.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 절차는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교육공동체 안내) → 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구성→제정, 개정안 발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정 →토론회, 공청회(학교사정에 의하여 생략 가능) →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 입안예고(20일 이상 예고) →심의 확정 →제개정된 규정 제출 →공포 및 정보공시 →안내 및 연수, 홍보에 따른다.

부 칙 < 1999. 3. 1 >

- ① 본교의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③ 본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1. 2. 25 >

- ①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3. 2. 25 >
- ①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6. 2. 22 >
- ①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7. 2. 22 >
- ① 본 학칙은 200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7. 6. 22 >
- ① 본 학칙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7. 9. 7 >
- ① 본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7. 9. 30 >
- ① 본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9. 3. 20 >
- ① 본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1. 7. 1 >
- ① 본 학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2. 4. 10 >
- ① 본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2. 8. 22 >
- ① 본 학칙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2. 9. 24 >
- ① 본 학칙은 201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3. 6. 28 >
- ① 본 학칙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6. 4. 29 >
- ① 본 학칙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7. 4. 3 >
- ① 본 학칙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9. 4. 3 >
- ① 본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0. 9. 1. >

- ① 본 학칙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1. 8. 20. >
- ① 본 학칙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2. 3. 21. >
- ① 본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2. 12. 1. >
- ①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3. 2. 15. >